

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

#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동의안은 2010년 5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6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방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방법과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녹색성장 체계화 및 기반 마련

## 3. 주요내용

-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·시행 절차(안 제6조)
-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(안 제7조)
- 충청북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8조)
- 녹색생활운동의 촉진(안 제14조)

## 4. 검토의견

이번에 제정하는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3일 제정·공포된 『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』 과 2010년 4월 13일 제정된 『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』 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,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, 에너지절약,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(안)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주요내용은

- 자치단체의 책무(안 제4조)
  -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, 주민에 대한 교육·홍보,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 강구
-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(안 제6조)
  -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·시행
-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(안 제7조)
  -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점검 및 평가 실시
-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·운영(안 제8조)
  -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(시행령 제15조)
  - 분과위원회 구성(안 제10조)

-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11조)
-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(안 제12조)
-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(안 제14조) 등임.
  
- 본 조례안은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(2010년 1월 13일 제정공포)과 같은 법 시행령(2010년 4월 13일 제정공포)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, 에너지절약,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(안)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 임 :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부. 끝.